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27
----------	-------

발의연월일 : 2026. 9. 2.

발 의 자 : 주철현 · 김문수 · 조계원
안도걸 · 임문영 · 김남희
조인철 · 홍기원 · 박균택
전진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회는 회원인 1,110명의 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수의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출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임기가 4년 단임으로 제한되어 있어 중앙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농업협동조합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조합 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회 회장 임기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있는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43조, 제125조, 제130조 및 부칙 제2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년 1회”를 “조합장이 매년 1회”로, “필요할 때에”를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둔다”를 “두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한다.

제130조제1항 전단 중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를 “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임할 수 없다”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장의 선출과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130조

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같은 해 임기만료에 따라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만료일은 2027년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총회) ① (생략)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u>구성한다</u> . ③ 정기총회는 <u>매년 1회</u>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u>필요할 때에</u> 수시로 소집한다.	제34조(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u> . ③ ----- <u>조합장이 매년 1회</u> ----- <u>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u> -----.
제43조(이사회) ① (생략)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u>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u> . ③ ~ ⑦ (생략)	제43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u>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25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u>이사회를 둔다</u> . ② ~ ⑦ (생략)	제125조(이사회) ① ----- ----- <u>두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u>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투표까지 행사한다</u> .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u>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되</u> ----- ----. <후단 삭제>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u>중임할 수 없다.</u>	⑤ ----- --- <u>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u>
⑥ ~ ⑪ (생략)	⑥ ~ ⑪ (현행과 같음)